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2. 12.

이준규 · 김진수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기업이 증자 또는 감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이나 분할 또는 해산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무상주식이 교부되는 자본거래가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의제배당이다.

우리나라의 의제배당과세제도는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 중 가장 복잡하고 불명확한 부분 중의 하나로서 과세대상은 법인의 합병·분할·감자·해산으로 인한 주식소멸이익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두 가지이다.

이러한 의제배당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의제배당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상당히 다른 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였으나 최근 의제배당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의제배당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제도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소득세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제배당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와 본원의 김진수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

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준 본원의 한상국 박사와 경희대학교의 최명근 교수 및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한 심재진 주임연구원과 장정순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요약>

I.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법인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에 따라 주주가 받는 대가가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인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의 가액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주식소멸이익의 경우 당해 주식소멸을 양도로 볼 수도 있고 배당으로 볼 수도 있으며 무상주식의 경우 당해 무상주식이 주주에게 있어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주식소멸이익의 구분기준은 비안분적 개념(non-pro rata concept)과 법인축소원칙(corporate contraction doctrine)의 두가지로서 사업폐지와 관련되지 않는 안분적 감자와 분할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Spin off의 경우에만 배당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고 있다. 또한 무상주식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안분적 배정 등 불평등배정, 주주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 배분, 우선주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예외조치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제배당과세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무상주식취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개편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식소멸이익에 대한 과세는 산정방식은 양도설

에 따르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양도의 성격을 갖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과세형평이 저해되고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또한 주식소멸손실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천징수시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무상주식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과세하고 있으나 무상주식의 교부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의 입장에서 자본전입되는 잉여금의 유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무상주식의 과세는 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해치면서 법인들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회피하게 되므로 세수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정책시사점

현행 우리나라의 의제배당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소멸이익의 과세에 있어서 주식소멸을 현행과 같이 배당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양도와 배당으로 구분한다. 그 구분기준으로는 미국 세법에서 적용하는 비안분적 개념과 법인축소원칙을 적용하여 사업폐지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안분적 감자와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안분적 존속분할의 경우에만 배당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둘째, 주식소멸을 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액배당설을 채택하여 주주가 받는 주식소멸대가 전액을 배당수입으로 보되, 이 중과세조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셋째, 무상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넷째, 무상주식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식배당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교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로 양도소득으로 보거나 과세에서 제외할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의 감소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I. 서론	11
II. 의제배당의 이론적 고찰	13
1. 의제배당의 의의	13
2. 주식소멸이익	15
3. 무상주식	22
III. 현행 세법상의 의제배당과세제도	44
1. 법근거 및 납세의무자	44
2. 주식소멸이익	46
3. 무상주식	57
IV. 외국의 입법례	67
1. 미 국	67
2. 일 본	82
V. 의제배당과세의 문제점	95
1. 주식소멸이익	95
2. 무상주식	102
VI.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118
1. 주식소멸이익	118
2. 무상주식	130

VII. 결 론	134
참고문헌	137

표 목 차

<표 II-1>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63
<표 IV-1> 일본법인세법상 간주배당 규정의 신규법 비교	88
<표 V-1> 지분비율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 (재배정하는 경우)	111
<표 V-2> 지분비율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 (재배정않는 경우)	112
<표 V-3> 의제배당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포함한 지분비율 (재배정하는 경우)	113
<표 V-4> 의제배당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포함한 지분비율 (재배정않는 경우)	114
<표 V-5> 무상증자의 재원별 분류: 1989~1993	115
<표 V-6> 무상증자의 재원별 분류: 1998~2002년 10월	116
<표 VI-1> 주식소멸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개선안	125

그림목차

[그림 II-1] 상법상 배당과 의제배당의 분류	15
----------------------------------	----

I. 서론

의제배당과세제도는 법적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행 세법 중 복잡하고 불명확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좁은 의미에서 의제배당과세제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제배당)와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를 말한다. 그러나 법적 형식은 배당이 아니나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경우는 이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좁은 의미의 의제배당 이외에 국제조세조정예관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 및 제17조(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은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닌 경제적 거래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추가로 과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배당세액공제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단계에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세액을 수입배당액에 가산(gross-up)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좁은 의미의 의제배당은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소멸이익은 감자·해산·합병·분할 등 법인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 그 주식의 소멸대가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말하며, 무상주식은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의제규정의 속성상 그 의제하는 내용이 실질과 다르더라도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그 타당성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간주제도나 소득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과세제도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의제규정이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면서 조세정책적 타당성도 결여하고 있다면 당해 의제규정의 존속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의제배당 중 감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 등이 소멸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소득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겠으나 그 소득의 내용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무상주식의 경우 이를 실질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는 논란이 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의제배당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인 의제배당은 좁은 의미의 의제배당인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으로 한정하기로 하며 특히 그 존속의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의제배당과세의 의의 및 의제배당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다루고 제Ⅲ장에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제Ⅴ장에서는 의제배당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제Ⅵ장에서는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제Ⅶ장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II. 의제배당의 이론적 고찰

1. 의제배당의 의의

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이라 함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¹⁾ 중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금전 기타 재산을 말하며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배당뿐 아니라 주식배당²⁾과 중간배당³⁾을 포함한다. 또한 건설이자배당⁴⁾은 개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잉여금 중에서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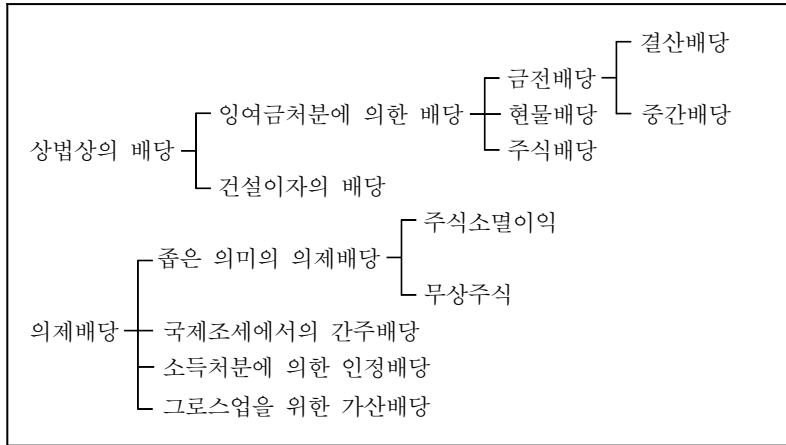
-
- 1)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 ① 자본의 액
 -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2)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62조의 2).
 - 3)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 3).
 - 4)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 내에 연 5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3조 제1항). 또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한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법률상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건설이자배당과는 달리 의제배당이라 함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의제배당은 좁은 의미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제16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여러 가지 유형의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⁵⁾의 소멸이익과 무상주식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에서의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피난방지세제에 의한 간주배당,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배당, 배당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그로스업을 위한 가산배당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의제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의제배당과 넓은 의미에서의 다른 의제배당은 과세의 논리, 근거 및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좁은 의미의 의제배당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5)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있어서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하에서도 같다.

[그림 II-1] 상법상 배당과 의제배당의 분류



2. 주식소멸이익

가. 의의

법인이 설립 또는 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주식을 원시취득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주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는 주식양도이익으로서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양도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의 방법으로 자본의 구조 또는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변경시킬 목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소멸시킴에 따라 당해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가 소

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소멸시키는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로 받는 재산가액이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본 연구에서는 주식소멸이익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주식소멸이익은 주식양도이익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당해 주식소멸이익이 어떻게 과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나. 성격

감자·해산·합병·분할 등 일정한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주식소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양도설, 차액배당설, 혼합설 또는 전액배당설이 대립될 수 있다.

1) 양도설

양도설에 의하면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에 의하여 보유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감소에 있어서 주식을 주주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주식병합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보유주식의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 등에서 사원이 퇴사하거나 탈퇴하여 출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사 또는 탈퇴하는 사원이 회사에 지분을 양도하고 회사는 매입한 지분에 상당하는 출자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의 해산에 있어서도 주주가 해산하는 법인

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며 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다. 또한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설에 따른 경우 주식소멸이 당해 주주의 의사에 반한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양도설에 의할 경우 주식소멸이익은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양도설은 자본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주식의 소멸이 외견상 주식의 양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주식의 소멸은 당해 주식이 궁극적으로 잔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주식의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양수도와 다른 법적 행위인 것이다. 물론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이 소멸할 주식을 주주로부터 인계받아 실제로 소각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로 인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주식소멸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합병이나 분할이 주식교환을 기초로 한 인격승계설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주식이 소멸하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⁶⁾된

6) 이는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격승계의 개념에서 당해 주식의 본질이 새로운 주식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본다면 교환 자체가 경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계학에서도 동종자산의 교환은 수익획득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산처분손익을 계상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 또는 분할의 개념은 인격승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의 소멸을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2) 차액배당설

차액배당설에 의하면 주주가 주식소멸로 인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감소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당해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본다. 즉 법인이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면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배당에서와 같이 배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액배당설에 따를 경우 과세대상인 차액은 법인이 감자하는 경우에는 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자차손⁷⁾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소멸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청산소득⁸⁾ 또는 분할양도차익⁹⁾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을

하지 아니한다.

- 7) 감자차손은 감소하는 자본금을 초과하여 주식소멸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이 감자되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8) 청산소득은 해산·합병·소멸분할에 있어서 해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분할의 대가가 해산·합병·분할 당시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을 말하며 이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 새로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를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차액배당설의 입장에서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 9) 분할양도차익은 존속분할에 있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분할대가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액으로 해산·합병·소멸분할에서의 청산소득에 해당한다.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소멸대가 중 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자본의 환급(출자의 반환)으로 보게 된다.

차액배당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상법상 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주식소멸이익은 배당의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에 해당될 수 없다.

둘째, 배당은 주주의 지위에서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주식소멸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이를 배당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배당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급받는 것인데 주식소멸이익은 주주의 지위가 없어지면서 받는 것이므로 배당보다는 양도의 성격이 더 크다.

넷째, 주식소각에 의한 감자, 합병 등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소각 또는 합병에 앞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감자 또는 합병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으로 볼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에 다툼의 여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3) 혼합설

혼합설은 주식소멸의 성격이 배당과 양도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혼합설은 차액배당설의 입장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감자차손, 청산소득 또는 분할양도차익 등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되, 주주의 주식소멸이익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주식소멸이익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현행 세법에서는 혼합설의 입장에서 간주배당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배당액} &= \text{감자차손} \cdot \text{청산소득} \cdot \text{분할양도차익} \\ \text{주식양도차손익} &= \text{주식소멸대가} - \text{주식취득가액} - \text{배당액} \end{aligned}$$

혼합설은 그 논리상 정교하게 보이기 는 하지만 결국 차액배당설과 양도설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전액배당설

전액배당설은 주식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한 주주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소멸의 대가 전액이 배당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모든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매입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본이 감소된 후에도 주주 각각의 지분비율은 자본감소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이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지급받음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주식의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설이나 차액배당설과는 달리 주식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감소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분비율에 비례하는 주식상환(stock redemption)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다. 예시에 의한 비교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 이익잉여금이 200,000,000원 있는 A법인이 자본금의 50%를 감소하기로 하고 주주에게 보유주식 2주당 1주를 소각하되 소각되는 주식 1주당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또한 A법인의 주주는 갑과 을 2명으로 각각 5,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갑은 당해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고 을은 당해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차액배당설, 양도설, 혼합설 및 전액배당설에 의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감자차손} &= \text{감자대가} - \text{감자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본금} \\ &= 10,000\text{주} \times 50\% \times 15,000\text{원} - 10,000\text{주} \times 50\% \times 10,000\text{원} \\ &= 75,000,000\text{원} - 50,000,000\text{원} = 25,000,000\text{원} \end{aligned}$$

양도설에 의한 과세소득 = 양도차익 = 감자대가 -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begin{aligned} \text{갑 주주의 양도차익} &= 75,000,000 \times 50\% - 2,500\text{주} \times 8,000\text{원} \\ &= 17,500,000\text{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을 주주의 양도차익} &= 75,000,000 \times 50\% - 2,500\text{주} \times 25,000\text{원} \\ &= \Delta 25,000,000\text{원} \rightarrow \text{양도차손 발생} \end{aligned}$$

차액배당설¹⁰⁾에 의한 과세소득 = 배당 = 감자차손 상당액

$$\text{갑 주주의 배당소득} = 25,000,000\text{원} \times 50\% = 12,500,000\text{원}$$

$$\text{을 주주의 배당소득} = 25,000,000\text{원} \times 50\% = 12,500,000\text{원}$$

10) 차액배당설에 의한 경우 주식소멸대가 중 감소하는 자본금 상당액인 50,000,000원은 자본의 환급(출자의 반환)에 해당한다.

혼합설에 의한 과세소득

갑 주주의 과세소득 = 배당소득 + 양도차익

배당소득 = 12,500,000원

양도차익 = 17,500,000원 - 12,500,000원 = 5,000,000원

을 주주의 과세소득 = 배당소득 + 양도차익

배당소득 = 12,500,000원

양도차손 = △25,000,000원 - 12,500,000원 = △37,500,000원

전액배당설에 의한 과세소득

갑 주주의 과세소득 = 배당소득 = 75,000,000원 × 50%

= 37,500,000원

을 주주의 과세소득 = 배당소득 = 75,000,000원 × 50%

= 37,500,000원

3. 무상주식

가. 무상주식의 의의

무상주식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1조). 법인이 무상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1조). 상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합병차익, 분할차익 및 주식의 포괄교환·이전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열거하고 있다(상법 제459조). 또한 2000년말에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도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조정 중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해외사업환산대는 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계정에 해당하므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잉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함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54조).

나) 감자차익

감자차익이라 함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즉 감자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다) 합병차익

합병차익이라 함은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금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잉여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산의 차감항목인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10조).

라) 분할차익

분할차익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9-55).

마) 주식의 포괄교환·이전차익

주식의 포괄교환차익이라 함은 다른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¹¹⁾을 통하여 그 다른 회사(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360조의 2 제2항).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상법 제360조의 7).

주식의 포괄이전차익이라 함은 다른 회사(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괄이전받아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¹²⁾ 완전모회사의 설립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완전모회사의 설립자본의 한도액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상법 제360조의 18).

바)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이라 함은 2000년말에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의 폐지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지만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기 전에 재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계상된 것은 자본에 전입되거나 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때까지 자본잉

12)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360조의 15 제2항).

여금으로 잔존한다.

사)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기타 자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2)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2조).

가) 이익준비금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이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며 이익 중에서 적립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나) 기타 법정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상장법인등의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¹³⁾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이

13) 상장법인 등은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장법인등의재무관리규정 제7조).

① 유형자산처분이익(특별이익에 한한다)이 유형자산처분손실(특별

에 해당한다(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정 제87조).

다)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으로 한다.

라)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로부터 이월된 이익잉여금의 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배당 등 당기 이익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 주식배당과의 차이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 2)이나 무상주식의 교부(상법 제461조)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①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가능하지만 무상주식의 교부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¹⁴⁾을 초

손실에 한한다)과 해당 법인세 및 주민세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그 초과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②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14) 단, 주식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제1항).

과하지 못하지만 무상주식의 교부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 ③ 주식배당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그 원천으로 하지만 무상주식의 교부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모든 잉여금을 그 원천으로 할 수 있다.
- ④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지만, 무상주식을 교부받은 주주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후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⑤ 주식배당은 법률상 배당에 해당하지만 무상주식의 교부는 법률 형식상의 배당이 아니다.

다. 주식배당과 무상주식의 법적 성격

주식배당과 무상주식의 법적 성격은 이익배당설 또는 주식분할설에 의하여 설명된다. 주식배당과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의 논리는 이익배당설과 주식분할설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과세지지와 과세반대로 대립된다.

1) 이익배당설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은 이익배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은 주식을 교부하는 법인에게서 금전배당에서와 같이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며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배당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의 교부는 두 개의 복합된 거래 또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즉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즉시 주주로부터 당해 금전을 주금으로 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두 개의 복합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면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이 이익배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식배당 또는 무상주식의 교부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의 증가분은 시장에 매각할 경우 현금의 수입이 생기며 이는 금전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익배당설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고 이 범위 내에서 주식을 교부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법상 주식배당은 금전배당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무상주식의 교부는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이익배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현행 세법은 주식배당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익배당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식분할설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은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이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의 교부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며 이는 자본 구성항목간의 계정대체¹⁵⁾

에 불과하므로 자본의 총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보유주식수만 늘어날 뿐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1주당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재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주식배당 또는 무상주식은 법인이나 주주의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금전배당의 경우에도 주주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산의 구성은 달라진다. 즉 금전배당을 계기로 주식의 가치 가운데 일부가 현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실현주의의 관점에서 현금배당을 과세의 계기로 삼는 근거이다. 한편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의 경우에는 주주의 재산구성에도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분할과 비슷하므로 배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주식분할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공시의 주가반응

1) 주가반응에 관한 가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법인이 주주에게 자사의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은 각자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게 되며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즉 금전배당과 달리 법인의 자산에 변동

15)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동액의 잉여금이 감소하여 자본의 총계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을 가져오지 않고, 주주의 소유구조에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며, 단지 주식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가의 비례적 하락을 가져올 뿐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도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볼 때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가 주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또는 주식분할)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의 경우 그 공시시점에서 유의적인 정(+)의 시장반응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반응의 유의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가) 신호가설 (signalling hypothesis)

신호가설에 따르면 기업이 무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동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개선 등과 같은 좋은 내부정보를 투자자에게 신호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공시를 호재(good news)로 받아들여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공시가 신빙성 있는 신호로서 작용하기 위하여는 모방에 따른 비용 내지는 손실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재산의 증가 없이 단순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불과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모방에 따른 비용이 미미하여 신빙성 있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좋은 내부정보가 없는 기업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우량기업인 듯 행동해도 그에 따른 손실이 없어 결국 투자자

16) 김병기(1997), pp. 38~41.

들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가치상승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래 현금흐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기업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용이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첫째, Grinblatt et al.¹⁷⁾이 지적했듯이 법적규제, 증권거래규정, 채권계약규정 등이 이익잉여금과 연계되어 있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면 경영자는 투자, 자본구조 및 배당 결정 등에 있어 외부로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후에도 이익잉여금이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업만이 이러한 재무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증자로 인한 추후 금전배당의 증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만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공금리 수준의 배당을 하는 경향이 있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주주들로부터의 배당압력과 이로 인한 금전배당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 현금흐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기업에게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의 비용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실시로 인한 금전배당의 증가가 조세부담 때문에 대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배당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직접 과세되고,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도 당해 무상주식에 대하여 미래 배당금을 수령할 때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분리과세되는

17) Grinblatt et al.(1984), pp. 461~490.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하여,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결정은 소유경영자(owner-manager)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통해 양질의 내부정보를 전달하려 하고, 단순 모방에 따른 비용(이익잉여금의 감소, 미래 현금배당의 증가, 조세부담의 증가)이 발생하는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실시를 호재로 인식하게 되어 이러한 재무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의 시장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나) 기업규모가설 (firm size hypothesis)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공시는 공시내역은 물론 기업에 관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므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실시는 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해 저평가되어 왔던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가 투자자의 수를 늘려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면, 주식거래에 있어 유동성이 낮아 피해를 보았던 기업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실시를 통해 주가의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장의 관심 또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혜택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크다는 것이 기업규모가설의 요지가 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보전달이나 주식거래의 유동성 면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이다.

다) 자본금확대가설 (equity expansion hypothesis)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가 자기자본총액 대신에 자본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가 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¹⁸⁾. 재무구조이론에서는 타인자본인 부채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자기자본총액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장부가보다는 시가를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이든 구조적 이유에 의해서든 자본금이 자금차입이나 사업기회 확대의 주요 요건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는 단순한 자본전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2) 관련연구의 검토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과 그 요인의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들 및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Woolridge & Chambers의 연구

Woolridge & Chambers는 주식배당의 신호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¹⁹⁾. 그는 주식배당의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배당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경영자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으면서 모호하지 않은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주식배당의

18) 임웅기·남명수(1993), pp. 77~107.

19) Woolridge & Chambers(1983), pp. 5~15.

크기가 공시수익률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공시일을 포함하는 주의 일별 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는 주식배당공시를 경영자가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였으며 주식배당의 크기가 공시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서 저율의 배당의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특히 3% 이하의 저율주식배당은 투자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주식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Grinblatt et al.의 연구

Grinblatt et al.은 1967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배분율이 10% 이상이면서 공시일 현재 AMEX 또는 NYSE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신호가설의 측면에서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공시기간(0, +1)의 초과수익률²⁰⁾과 기준기간(+4, +43)의 일별초과수익률을 비교하여 공시기간의 평균초과수익률이 기준기간의 평균초과수익률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공시기간의 평균초과수익률은 3.41%였으며 기준기간의 평균초과수익률이 0.10%였다. 순수한 주식배당 및 주식분할을 실시한 표본의 경우 공시기간의 평균초과수익률이 각각 5.87%, 3.29%이고, 기준기간의 평균초과수익률은 각각 0.14%,

20) 사건연구에서 초과수익률을 얻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모형으로는 다음의 시장모형(market model)이 있다.

$$AR_{it} = R_{it} - (\alpha_i + \beta_i R_{mt})$$

여기서, AR_{it} = t 시점에서의 개별기업 초과수익률(AR: Abnormal Return)

R_{it} = 기업 i의 t 시점의 보통주식 수익률

R_{mt} = t 시점의 주가지수 수익률

α_i, β_i = 시장모형($R_{it} = \alpha_i + \beta_i R_{mt} + \varepsilon_{it}$)의 회귀계수

0.16%였다. 따라서 초과수익률은 다른 요인이 아닌 공시효과의 결과였으며, 주식배당의 공시효과가 주식분할의 공시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²¹⁾.

다) Lakonishok & Lev의 연구

Lakonishok & Lev는 왜 기업들이 주식을 분할하고 주식배당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1963년부터 1980년까지 20여년 동안의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을 공표한 모든 기업과 동일 자산규모를 가진 동종 산업소속의 비분배기업을 대응시켜 공시 전후의 여러 기간에 대하여 이익 및 배당의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들은 주식분할을 하는 목적은 기업의 성장기간 동안에 상당히 증가한 주식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주식분할의 공시일 전후로 발생하는 3%~4%의 비정상적인 주식가격의 증가는 기업의 성장에 대한 전망에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의 경우처럼 급성장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시키려는 목적도 찾을 수 없으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식배당은 경영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금배당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²²⁾.

라) McNichols & Dravid의 연구

21) Grinblatt et al.(1984), pp. 461~490.

22) Lakonishok & Lev(1987), pp. 913~931.

McNichols & Dravid는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이 미래수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주식분할요인 그 자체가 신호인지 검증함으로써 신호가설에 대한 좀더 진보된 증거를 발견하고자 1976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일어났던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을 표본으로 하여 신호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주식분할이나 주식배당의 크기에 따라 정보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와 분할 전의 주가 차이를 통제한 이익예측오차와 주식분할이나 주식배당의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크기에 따라 이익의 예측오차가 증가함을 발견하였으며, 공시시점의 주가반응과 주식배당의 크기 및 이익예측오차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실증적 증거를 기초로 경영자들이 주식분할이나 주식배당률의 크기를 통하여 미래이익에 대한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자들도 주식분할이나 주식배당의 크기에 따라 기업가치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수정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마) 김철교의 연구

김철교는 대가 없는 주식분배, 즉 무상증자, 주식분할, 그리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특성과 주가반응을 연결시킴으로써 주가반응의 이유를 설명하고 기존 이론 또는 가설들의 실증적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1975년부터 1989까지의 15년 동안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을 실시한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표본의 수는 동기간 동안 무상증자 216건, 주식분할 37건, 주식배당 44건을 대상

23) McNichols & Dravid(1990), pp. 857~879.

으로 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⁴⁾.

- ① 기업의 특성에 있어서 무상증자 및 주식분할 기업은 사건 전에 배당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사건 후 1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
- ② 배당 증감은 일반적으로 영업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전망에 따라 정보효과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모든 무상주 발행의 경우 배당 증가의 경우가 배당감소의 경우보다 초과수익이 더 많아 정보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상증자와 주식분할을 비교하여 본 결과 무상증자가 특정기간에 더 높은 초과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보이익가설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초과수익이 누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 ④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보다 초과수익이 많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⑤ 무상증자와 주식분할에 있어서 권리락 당일에는 권리락 전후에 비해 상당히 큰 정(+)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여 미국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 ⑥ 무상증자의 경우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가 업종별지수 수익률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보다 크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무상증자가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평균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가지고 보다 우월한 영업성과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 속하고 있다고

24) 김철교(1992), pp. 209~242.

하겠다. 즉 투자기회가설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 ⑦ 회귀분석 결과에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증자(배당) 비율이 클수록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상증자에 따른 초과수익은 증자전후 순이익증가율 또는 배당증가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호가설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바) 김태혁과 신용길의 연구

김태혁과 신용길은 1990년 3월부터 199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배당을 사전 공시한 1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배당 공시 시점 전후의 주가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시장조정모형과 위험조정모형을 이용하여 초과수익률을 측정된 결과 측정방법에 따라 규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기간에 걸쳐 누적초과수익률(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²⁵⁾의 형태는 초과수익률의 추정방법에 상관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주식배당 선언일을 기준으로 전후 1일의 기간(-1, +1)의 시장조정 CAR는 1.528% (t = 6.26), 위험조정 CAR는 1.0338% (t = 4.58)로 나타났으며, 주식배당 공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3일(-3, +3)간의 CAR는 시장조정의 경우 2.6999% (t = 7.44), 위험조정의 경우 2.1008% (t = 6.55)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 선언 후의 기간(+4, +17)의 시장조정 CAR는 -7.2537% (t = -7.44), 위험조정 CAR는 -6.0535% (t = -6.46)의 초과손실

25) 초과수익률 (\overline{AR}) = $\frac{1}{N_t} \sum_{i=1}^N AR_{it}$

누적초과수익률 ($CAR_{(-t, t)}$) = $\sum_{j=-t}^t \overline{AR}$

N_t = t 시점의 표본기업의 수

-t, t = 검증기간 동안의 시작일과 종료일

이 발생하였으며 (+18, +65) 사이의 시장조정 및 위험조정 CAR는 각각 9.3956% ($t = 6.87$), 12.5928% ($t = 8.47$)로 매우 큰 폭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공시일 전후 3일의 기간(-3, +3) 동안의 CAR를 종속변수로 하여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호이론 중 유보이익가설과 주의환기가설을 수용하게 되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주식배당의 정보전달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²⁶⁾.

사) 임용기와 남명수의 연구

임용기와 남명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과연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상증자 실시기업과 미실시 기업의 각종 재무비율을 변수로 선택,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들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표본수 610개 중 선정기준에 맞는 448개 기업을 선정하여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별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보이는 가장 뚜렷한 재무적 특성은 증자 직전연도 유보율이 높다는 것이다.
- ② 무상증자 실시기업은 증자 전에 비교적 양호한 현금수익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기업들은 회계적 차원에서의 요건(증자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여타 재무적 여건까지를 감안하는 것으

26) 김태혁 · 신용길(1992), pp. 79~110.

로 이해된다.

- ③ 대주주에 의한 지분 소유의 정도가 무상증자 실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명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④ 안정성 재무비율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통계치들이 나타나지 않고 설명변수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무상증자 실시기업과 미 실시 기업간의 차이를 전체 분석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게 구분해주는 변수는 유보율 하나이다. 판별분석을 통해 설명변수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이외의 변수들 즉 유동비율, 매출액 대비 현금이익률, 대주주지분율 등은 분석대상기간을 달리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을 보였다. 다만 대주주 지분율의 경우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심스럽게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소유경영자)의 이기적 동기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대리인문제(agency cost)해소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사내유보율과 함께 무상증자의 동기도 낮아진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²⁷⁾.

아) 우춘식과 신용균의 연구

우춘식과 신용균은 주식배당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순수 주식배당을 실시한 295개 기업을 표본으로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공시일과 공시후 1일(0, +1) 간의 누적초과이익률은

27) 임웅기·남명수(1993), pp. 77~107.

0.847%($t = 2.1689$), 공시기간 이후 기간(+1, +20)의 누적초과수익률은 2.507%($t = 2.507$)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주식배당의 공시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또한 주식배당률이 5% 이상인 표본의 누적초과수익률이 1.37%로, 5% 미만 기업의 0.5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배당 이후 EPS 증가와 감소 표본검증 결과는 각각 0.95%와 0.71%로 나타나 유보이익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자본금의 규모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자본금이 130억원 이상인 표본과 미만인 표본의 누적초과수익률이 각각 0.336%와 1.19%로 대기업보다 소기업의 주식배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주의환기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결과가 나타났다²⁸⁾.

자) 김병기의 연구

김병기는 무상증자의 실시 동기 및 투자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 공시된 444건의 무상증자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순수 무상증자를 실시한 196개 표본의 공시일 전후 2일(-2, +2)간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2.47%였고 이것은 유무상 병행증자 1.83%와 유무상 포괄증자 0.48%보다 상당히 높은 초과수익률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상증자와 결합된 무상증자는 순수한 무상증자와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증자비율이 클수록 호의적인 반응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자비율과 시장반응 사이에 정비례관계는 기업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들은 자사의 주식이 상승세에 있을 때 무상증자를 공시하는 경향을 보여

28) 우춘식·신용균(1996), pp. 115~136.

주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기업이 미래 현금흐름의 개선이라는 좋은 내부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신빙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신호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작은 규모의 기업이 이러한 신호효과로 인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업규모가설과 주식발행 자본금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무상증자로 사업기회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성장가설도 지지하고 있다²⁹⁾.

29) 김병기(1997), pp. 35~70.

Ⅲ. 현행 세법상의 의제배당과세제도

1. 법근거 및 납세의무자

의제배당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주주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수도 있고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주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과세제도는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하위규정으로 두고 있다.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한편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과세제도는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규정을 두고 있다.

-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제배당의 열거)

-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제배당)
-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취득가액계산의 특례)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과세제도와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과세제도는 그 내용상 거의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은 원천징수의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그로스업(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적용³⁰⁾되지만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하여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 3)이 적용된다. 셋째,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은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비하여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은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넷째, 주식소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단기소각주식에 대한 특례에서 소득세법에서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식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30) 다음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 ①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③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법인 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의제배당

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주식소멸이익

가. 주식소멸이익의 유형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주식소멸이익을 배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이는 의제 규정의 성격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자본감소로 인한 주식소멸이익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즉 유한회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등의 경우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상법상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은 감소되

Ⅲ. 현행 세법상의 의제배당과세제도 47

지 아니한다.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감소하지 아니하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해석도 이익소각으로 인한 주식소멸을 의제배당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서일 46011-10447, 2002. 4. 4).

감자 대가가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자로 인한 주식소멸을 배당으로 보는 한 양도를 전제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다(재법인 46012-115, 2002. 6. 20 및 소득 46011-21166, 2000. 9. 22). 다만,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주식소멸이익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조직변경하기 전의 법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7-3).

3) 피합병으로 인한 주식소멸이익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4) 분할로 인한 주식소멸이익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나. 금전 외의 재산가액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소멸이익은 주식소멸의 대가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주식소멸의 대가 또는 주식의 취득대가가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원칙

주식소멸의 대가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대가가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자본거래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가가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말하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 증여의제), 동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동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보충적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예를 들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의 고시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및 이후 각 2월간의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순의가치 중 큰 금액이 재산의 평가액이다.

2)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발행금액으로 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416조). 따라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이사회가 정한 발행가액이 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영으로 한다.

3)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 또는 분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당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가액은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과 그 취득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 인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또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분할이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 시행령 제82조 제3항).

-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일 것.
- ②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4)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자본거래이익이 있는 경우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불평등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되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는 당해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이 경우 당해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이 당해 자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합병 또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과 분배받은 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귀속시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소멸이익의 귀속시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① 자본감소로 인한 주식소멸이익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 ②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주식소멸이익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③ 피합병으로 인한 주식소멸이익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④ 분할로 인한 주식소멸이익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라. 단기소각주식에 대한 특례

자본감소로 인한 주식소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0)으로 본다. 이는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일반원칙인 평균법에 대한 예외이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 후 단기간(2년) 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과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Ⅲ. 현행 세법상의 의제배당과세제도 53

단기소각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각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이 있는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text{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frac{\text{주식소각이 있는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text{주식소각이 있는 이후의 주식수의 합계}}$$

단기소각주식에 대한 특례를 가설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A법인과 B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익금에 산입될 금액 및 필요한 세무조정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 1999년 2월 5일 : A법인(총발행주식수 5,000주)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자기주식소각이익 4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 2000년 4월 27일 : B법인은 A법인의 주식 1,000주(주당 액면 10,000원)를 주당 16,200원에 취득하였다.
- 2001년 7월 15일 : A법인은 앞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4,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의 주식 800주를 교부받고 장부상 1주당 취득가액을 조정하였다.
- 2001년 10월 15일 : B법인은 보유중인 A법인 주식 중 720주를 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다.
- 2002년 6월 5일 : A법인은 주식 2주당 1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각되는 주식 1주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

1) 1999년 2월 5일

A법인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감사차익의 일종으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2001년 7월 15일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였고 당해 소각 이후에 B법인이 A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B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유주식의 장부상 단가(주당 장부가액)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frac{1,000\text{주} \times 16,200}{1,000\text{주} + 800\text{주}} = 9,000\text{원}$$

3) 2001년 10월 15일

B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하여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차) { 현 금(익금) 8,640,000원 (대) 유가증권 6,48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 2,160,000원

* 유가증권 처분당시 장부가액 = 720주 × 9,000원 = 6,480,000

4) 2002년 6월 5일

A법인은 감자차익이 발생하나 익금불산입항목이며 B법인은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의제배당액은 유상감자대가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① 유상감자대가 = 감자주식수×8,000원 = 4,320,000원

$$* \text{감자주식수} = \text{잔존주식수} \times \frac{1}{2} = (1,000 + 800 - 720) \times \frac{1}{2} = 540\text{주}$$

② 감자직전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

$$* \text{무상취득분} : 800 \times \frac{(1,800 - 720)}{1,800} = 480\text{주}$$

$$* \text{유상취득분} : 1,000 \times \frac{(1,800 - 720)}{1,800} = 600\text{주}$$

$$* \text{장부가액} = 480\text{주} \times 0 + 600\text{주} \times 16,200\text{원} = 9,720,000\text{원}$$

③ 감자주식(540주)의 취득가액 : 무상취득주식을 먼저 감자한 것으로 계산함

$$* \text{무상취득주식} : 480\text{주} \times 0 = 0$$

$$* \text{유상취득주식} : 60\text{주} \times 16,200 = 972,000\text{원}$$

④ 의제배당액 = 4,320,000원 - 972,000원 = 3,348,000원

나)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평균법을 적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 현 금(익금) 4,320,000원 (대) 유가증권 4,860,000원
 { 유가증권처분손실 540,000원

* 유가증권 처분당시 장부가액 = 540주×9,000원 = 4,860,000

다)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유가증권처분손실과 의제배당의 합계액 3,888,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또한 중복과세 조정을 위하여 1,004,400원 (= 3,348,000×30%)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라) 감자직후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

다음과 같이 계산한 1주당 가액 16,200원이 장부가액이 되며 양도할 때 손금에 산입될 금액이 된다.

$$\frac{16,200,000 - 6,480,000 - 972,000}{1,000\text{주} + 800\text{주} - 720\text{주} - 540\text{주}} = 16,200\text{원}$$

마.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특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소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소멸대가에서 차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소득세법상의 소액주주³¹⁾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3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서 당해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단기소각주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 제7항).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무상주식

가. 이익배당설의 입장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무상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무상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익배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는 무상주식은 원칙적으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무상주식의 가액은 배당이 아니라 주식분할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나. 예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만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무상주식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1)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자기주식소각이익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소각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자본에 미달하는 차이를 말하며 감자차익의 일종이다.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교부받는 무상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당해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 ② 소각 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주식소각이익

2) 과세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배당은 이익(이익잉여금) 중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무상주식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면 금전배당이나 주식배당과 같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식도 배당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잉여금을 세무상 이익(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식을 교부받는다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과 같이 배당으로 본다.

다음에 열거하는 자본잉여금은 발생 당시 주식발행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세무상 이익잉여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교부받는 무상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가) 기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주식의 포괄교환·이전차익 및 재평가적립금 이외의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나) 합병평가차익 등

합병차익은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승계자산의 평가차익³²⁾, 합병감자차익³³⁾,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그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합병차익의 구성내용을 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합병차익의 구성내용 중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말한다.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은 발생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합병차익의 구성내용 중 승계자산의 평가차익과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그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합병평가차익 등으로 한다. 이는 인격승계설의 입장에서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차익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해 잉여금들이 과세된 잉여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 분할평가차익 등

분할차익의 경우에도 합병차익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승계자산의 평가차익³⁴⁾, 분

-
- 3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 33)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34)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의 장

할감자차익³⁵⁾,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그 자본전입이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분할차익의 구성내용을 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분할차익의 구성내용 중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말한다.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분할차익은 발생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분할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분할차익의 구성내용 중 승계자산의 평가차익과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그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분할평가차익 등으로 한다. 이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에서와 같이 인격승계설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등의 잉여금이 분할차익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해 잉여금들이 과세된 잉여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2000년말에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면 재평가차익 중 토지³⁶⁾에서 발생한 것은 익금에 산입하며 토지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것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35)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6) 1983년말 이전에 취득하고 1984년부터 1997년까지 재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1998년 이후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익금산입으로 인한 과세가 토지 처분시까지 유예된다.

3) 자기주식으로 인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증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³⁷⁾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의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식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식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모두 다른 주주들에게 의제배당과세가 적용된다.

- 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될 무상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 그 재배정된 주식의 가액을 다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한다.
- ②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될 무상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 그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자본에 전입되는 잉여금의 유

37)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형별로 요약하면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1>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본전입 잉여금의 구분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여부	
		지분비율에 따른 배정분	자기주식으로 인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분
이익 잉여금	이익준비금	○ ¹⁾	○
	법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	○
	처분전 이익잉여금	○	○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
	감자차익	×	○
	합병차익	×	○
	분할차익	×	○
	주식의 포괄교환· 이전차익	×	○
	재평가적립금	×	○
	기타 자본잉여금	○	○

주: 1) ○: 의제배당 해당 ×: 의제배당 제외

2) ① 소각 후 2년내의 자기주식소각이익

② 소각 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주식소각이익

다. 잉여금의 일부 전입

1)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전입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과 토지 이외의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7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후단).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액

$$= \text{자본전입한 재평가적립금} \times \frac{\text{토지의 재평가차액}}{\text{자산재평가차액}}$$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전입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전입한 것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 등 또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전단).

- ①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 ② 합병감자차익 또는 분할감자차익
- ③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그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④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그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
- 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무상주식의 가액

무상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27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마.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무상주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시기는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법인의 기관 중 어떤 기관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를 한 날이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당해 자본전입을 결의하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있는 후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신주의 주주가 되며 이 날이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바. 무상주식의 장부가액

1주당 장부가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식은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평균법을 적용하여 주당 장부가액을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식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총액은 변동하지 아니하며 신·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만 조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text{증자 후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무상주식 교부 전 장부가액} + \text{의제배당액}}{\text{무상주식 교부 전 주식수} + \text{무상주식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text{증자 후 1주당 장부가액} = \frac{\text{무상주식 교부 전 장부가액}}{\text{무상주식 교부 전 주식수} + \text{무상주식수}}$$

$$\text{또는} = \frac{\text{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IV.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가. 주식분배

1) 주식배당과 무상주식의 불구분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배당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식의 교부에 대한 구별이 없으며 이를 포괄하여 주주에 대한 주식분배(stock distributions) 또는 주식배당(stock dividends)이라고 한다.

2) 주식분배에 대한 과세의 연혁

미국 세법상 주식분배에 관한 과세제도는 상당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⁸⁾. 1913년에 제정된 미국세법(Revenue Act of 1913)에서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1916년에 제정된 미국세법(Revenue Act of 1916)에서는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소득에 포함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기

38) Bittker & Eustice (2002), pp. 8-93~8-99.

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통주만 발행한 법인이 보통주를 배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³⁹⁾. 그 판결의 논지는 “주식배당은 법인의 재산을 유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주주의 재산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며 주식배당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법인의 이익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곧 주주의 부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소득을 실현시켰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즉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법인의 자산과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주식배당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고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1주당 지분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총지분율은 주식배당을 받기 전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분배가 전면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즉 우선주(preferred stock)와 보통주(common stock)가 모두 발행된 법인에게 있어서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보통주를 분배하는 것은 보통주주의 희생으로 우선주주의 지분을 향상시킨 것이므로 보통주를 분배받은 우선주주에게 과세될 수 있다는 판례⁴⁰⁾와 보통주주에게 우선주를 분배한 것은 보통주주가 종전에 가지지 않던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다는 판례⁴¹⁾가 있었다.

1936년의 미국세법(Revenue Act of 1936)에서는 주식에 의한 분배는 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주주에게 보통주를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분배

39)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212 (1920).

40) Koshland v. Helvering, 298 US 441 (1936).

41) Helvering v. Gowran, 302 US 238 (1937).

하는 것⁴²⁾, 보통주식만 발행한 법인이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분배하는 것⁴³⁾, 의결권 없는 보통주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보통주를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⁴⁴⁾은 판례에 의하여 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주식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되었다.

1954년의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54)에서는 종전의 지분비례 여부에 따른 과세원칙을 폐지하고 주식의 분배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Section 305)하였다. 이러한 주식분배의 과세제외원칙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첫째는 법인이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우선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주식분배이며, 둘째는 주식으로 받거나 주식으로 받는 대신 현금 등 다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주에게 부여되는 분배이다. 또한 우선주를 비과세로 분배받은 후 매각함으로써 무겁게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가볍게 과세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변경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Section 306)하였다.

1969년의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69)에서는 종전의 제305조를 수정하여 보통주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통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지 않게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분배하는 것을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1954년 이전에 적용되던 지분비례원칙을 재도입하였다. 특히 한 종류의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면서 다른 종류의 주주에게 주식배당 등 사실상의 지분증가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42) Helvering v. Griffiths, 318 US 371 (1943).

43) Strassburger v. CIR, 318 US 604, 607 (1943).

44) Helvering v. Sprouse, 318 US 604, 608 (1943).

3) 주식분배의 비과세원칙과 예외

현행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305조에서는 주주가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IRC Section 305(a)). 다만, 이 규정은 주주의 지위에서 주식을 분배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해 주주가 채권자, 거래처 또는 임직원일 경우에는 제30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주에 대한 주식분배의 비과세원칙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택적 주식분배

주주에게 주식배당과 현금 기타 재산에 의한 배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배당은 과세대상이 된다(IRC Section 305(b)(1)). 이러한 선택적 분배(optional distributions)에는 주주가 주식을 분배받은 후 분배받은 주식을 법인에게 현금으로 매입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의 주주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면 그 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주식배당은 과세대상이 된다.

(나) 비안분적 주식분배

일부의 주주에게는 현금 또는 주식 이외의 재산을 받게 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분배함으로써 인하여 그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분배는 과세대상이 된다(IRC Section 305(b)(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분배가 3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분배로 보아 비안분적 분배(disproportionate distributions)인지 여부를 결정한다(Regs. Section 1.305-3(b)).

(다) 보통주주에 대한 불평등 주식분배

일부의 보통주주는 우선주를 배당받고 다른 보통주주들은 보통주를 배당받는 경우 모든 주주들은 분배받은 주식에 대하여 과세된다(IRC Section 305(b)(3)).

(라) 우선주주에 대한 주식분배

우선주주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식은 비안분적 또는 불평등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IRC Section 305(b)(4)).

(마) 전환우선주의 분배

전환우선주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비안분적 분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된다(IRC Section 305(b)(5)). 따라서 전환조건이 유리하여 대부분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안분적 분배를 초래하지 않게 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주식분배의 의제

주식분배의 의제는 형식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주식분배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분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면 비안분적 주식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IRC Section 305(c)). 비안분적 주식분배로 의제될 수 있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변경
- ② 상환가격의 변경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격을 적정 수준 이하로 설정

- ④ 배당과 유사한 정기적 상환계획
- ⑤ 기타 상대적인 지분의 변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거래

5) 주식분배의 세무상 처리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분배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유하던 주식과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에 비례하여 당초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배분한다(IRC Section 307(a), Regs. §1.307-1). 즉 당초에 보유하던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감소하고 분배받은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새로이 산정되는 것이다.

한편 과세대상인 주식분배에 있어서 과세가액은 현물배당의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적 주식분배의 경우 주주가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선택하였다면 주주에 대한 과세가액은 분배받은 주식 등의 시가이다. 또한 주식을 분배하는 법인은 동시가를 세무상 잉여금에서 차감하며 분배받는 주주에게 있어서 분배받은 주식의 기초가액⁴⁵⁾은 동 시가로 한다. 그러나 선택적 주식분배에 있어서 주주가 현금 기타 주식 이외의 자산을 분배받기를 선택하였다면 현물배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선택적 주식분배 이외의 과세대상 주식분배는 선택적 주식분배에 준하여 처리한다.

6) 우선주배당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규제

우선주배당을 이용한 조세회피(preferred stock bailouts)는 주주

45) 동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에 산입될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대가에서 공제될 금액을 말한다.

가 법인의 잉여금을 유출시키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조세절감을 시도하는 조세회피유형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첫째,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배당한다. 보통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둘째, 금융기관에게 분배받은 우선주를 매각하여 현금을 수취한다.

셋째, 주주들은 우선주의 매각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다.

넷째, 법인은 우선주를 구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당해주식을 매입소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있어서 자본과 주식수의 유지 및 현금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위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의 매각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IRC Section 306).

나. 주식상환

1) 일반원칙

미국 세법에서 주식상환(stock redemption)이라 함은 법인의 자산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취득 후 주식의 발행을 취소하거나, 소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IRC Section 317(b)).

주식상환을 통하여 자본이 감소되는 법인으로부터 주주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미국 세법에서는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배당과 주식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비안분적 개념(non-pro rata concept) 또는 법인 축소원칙(corporate contraction doctrine)의 두가지이다. 비안분적 개념은 주식상환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주식의 양도로 본다는 것이고 법인축소원칙은 주식상환이 법인의 영업축소를 수반하는 경우에 주식의 양도로 본다는 것이다.

2)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상환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상환의 경우 당해 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상환은 세무상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으로 간주된다(IRC Section 302(a))⁴⁶⁾.

(가) 사실상 비안분적 주식상환

사실상 비안분적 주식상환(substantially disproportionate redemptions)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당해 주주가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IRC Section 302(b)(2)). 이 경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주주별로 정한다.

첫째, 주식상환 직후에 보유하는 의결권부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일 것

둘째, 주식상환 직후에 보유하는 의결권부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주식상환 직전에 보유하는 의결권부 주식에 대한 지분율의 80% 미만일 것

46)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을 초과하는 상환액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주식상환 직후에 보유하는 보통주식(무의결권부 주식 포함)에 대한 지분율이 주식상환 직전에 보유하는 보통주식에 대한 지분율의 80% 미만일 것

(나) 모든 주식의 상환

주주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완전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IRC Section 302(b)(3)). 이와 관련하여 총주식 중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면 모든 주식의 상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⁴⁷⁾.

(다) 법인의 부분청산(개인주주에게만 적용)

주식을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부분청산으로 인하여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금전 기타 재산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IRC Section 302(b)(4)).

법인의 부분청산으로 인한 주식양도의 간주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분배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이 지분에 비례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세가지의 측면에서 주식양도로 보는 다른 주식상환과 차이가 있다.

법인의 부분청산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IRC Section 302(e)).

첫째, 주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가 아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둘 이상의

47) Zenz v. Quinlivan, 213 F2d 914 (6th Cir. 1954).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있어서 하나 이상의 사업폐지(termination of business)가 이에 해당하며 주식양도를 구분하는 기준 중 비안분적 개념(non-pro rata concept)을 적용하는 대신 법인축소원칙(corporate contraction doctrine)을 적용하는 사례이다. 즉 법인이 5년 이상 영위한 둘 이상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폐지하여 분배하거나 사업의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잔존하는 사업은 부분청산 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분청산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당해 계획이 채택된 사업연도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라)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상환

위에서 언급한 사실상 비안분적 주식상환, 모든 주식의 상환, 법인의 부분청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주식상환이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IRC Section 302(b)(1)).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지분율의 변동 없이 주식상환을 통하여 법인의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수취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였더라도 주식의 감소 없는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사실상 배당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constructive ownership)하여 지분을 감소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주주가 1인인 법인에서 당해 주주에 대한 주식상환은 항상 사실상 배당에 해당한다.

셋째, 사업상 목적(business purpose)은 사실상 배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48) US v. Davis, 397 US 301, 397 US 1071 (1970).

넷째,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주식상환으로 인하여 당해 주주에 대한 지분율의 의미있는 감소(meaningful reduction)가 있어야 한다.

(마) 상속세 납부목적의 주식상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을 제공받는 경우 주주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과 상속세법상 인정되는 장례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해 주주가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IRC Section 303).

3) 과세가액

주식의 양도로 보는 주식상환의 경우 과세가액은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서 주식상환으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기초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자본이득은 배당소득에 비하여 가볍게 과세될 뿐 아니라 상환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주식의 기초가액이 더 커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주식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한편 배당으로 보는 주식상환의 경우에는 주식상환으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대로 과세가액이다. 즉 지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주식이 처분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하에 당해 주식의 기초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과세가액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주식수가 줄어들에 따라 잔존 주식의 1주당 기초가액은 증가 조정되어야 한다(Regs. Section 1.302-2(c)).

4) 관계회사주식 취득의 주식상환 간주

(가) 개요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주식상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볼 여지는 없다. 그러나 주식발행법인과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이 관계회사라면 경제적 실질은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자회사에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한다면 그 실질적 효과는 당해 경제적 실체의 자기주식 취득이며 이는 곧 주식의 상환과 같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주식상환의 성격에 따라 당해 거래를 배당으로 볼 수도 있고 주식의 양도로 볼 수도 있게 된다.

(나) 관계회사 주식의 취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이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에게 과세한다(IRC Section 304(a)(1)).

첫째, 1인 이상의 개인이 두 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

둘째, 두 법인 중 한 법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다) 모회사 주식의 취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에게 과세한다(IRC Section 304(a)(2)).

첫째,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

둘째,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

다. 청산, 합병 및 분할

1) 법인의 청산

법인이 완전히 청산(complete liquidation)함에 따라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은 주식과의 교환에 따른 대가로 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IRC Section 331). 즉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2) 법인의 분할

(가) 개요

미국에서 기업분할의 방식으로는 spin-off, split-off, split-up 등이 있다. Spin-off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 전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안분적 배정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Split-off는 분할법인의 일부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대가로 소유하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에게 제공하고 분할법인은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비안분적 배정이 가능하다. 또한 Split-up은 분할법인이 두 개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사업용자산의 전부를 이전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split-off와 같이 비안분적 배정이 가능한 분할방식

이다. 이러한 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 또는 양도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해 주주에게 과세하지 아니한다(IRC Section 355).

(나) 비과세분할의 요건

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주가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배받았는지, 주식을 받는 대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포기하였는지, 또는 분배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분할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이 때, 분할 후 주식을 분배받은 자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였더라도 당해 양도 또는 교환이 분할 전에 합의되었거나 약정된 것이 아니라면 분할의 주된 목적이 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한다.

②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 단, 분할법인이 분할 직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해 분할법인은 분할 후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당해 사업은 분할 직전 5년간 영위된 것이어야 하며 분할 전 5년 이내에 취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미국 세법(IRC)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판례 및 재무성규칙(treasury regulations)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법률적 요건(non-statutory limitations)으로서 중대한 법인의 사업목적(a significant

corporate business purpose)이 있어야 하고, 지분의 계속성이 유지(continuity of shareholder proprietary interest)되어야 하며,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the corporate business enterprise)이 유지되어야 한다⁴⁹⁾.

(다) 과세되는 분할의 과세방법

분할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Spin-off가 과세제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또한 Split-off가 과세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상환에 해당하며 주주에게 배당 또는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한편 Split-up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청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3) 합병

지분의 연속성(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이 유지되고 재조직의 계획(plan of reorganization)에 따라 실행되는 등 비과세분할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합병(tax-free type A reorganization)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주는 보유주식의 소멸에 대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Section 354(a)(1)). 따라서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에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비과세합병의 요

49) Bittker & Eustice(2002), pp. 11-55~11-62.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비과세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이외에 현금 기타 다른 자산(boot)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인식하여야 한다(IRC Section 356). 다만, 이 경우 손실이 산정되더라도 손실의 인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IRC Section 356(c)). 이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당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dividend-within-gain approach: IRC Section 356(a)(2)). 즉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실현이익)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합병법인 주식 이외의 다른 자산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이 중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익잉여금(undistributed earnings and profits)에 당해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차익으로 본다.

2. 일 본

일본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주배당(みなし配當)은 우리나라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과 유사한 개념이다. 법인의 합병이나 해산 등에 의하여 신주나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 중에 피합병법인 등의 이익적립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상법상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효과가 이익배당 등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간주배당과세제도는 일본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소득세법 제25조에서도 일본법인세법 제24조와 동일

한 개념의 간주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가. 간주배당규정의 변화

1) 2001년 개정 전의 간주배당과세제도

일본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간주배당과세규정은 2001년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간주배당과 관련하여 그 자체가 일부 미실현소득이라는 점 때문에 간주배당과세의 폐지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며, 2001년도 세법개정을 계기로 하여 간주배당소득의 범위와 관련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간주배당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2000년도까지 유지되었던 구 일본법인세법 제24조와 구 일본소득세법 제25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간주배당소득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항: 주식소멸이익

주주 등이 다음에 열거하는 분배를 받은 금액이, 그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이익적립금으로부터 구성되는 금액⁵⁰⁾은 배당으로 간주한다.

- ① 당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에 의해 교부되는 금전 및 기타의 자산
- ②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퇴사 또는 탈퇴에 의해 지분의 환불로

50) 위에서 「이익적립금」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란, 정확하게는 자본적립금 등으로부터 구성되는 부분의 금액 이외의 금액이며, 평가익으로부터 구성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서 교부되는 금전 및 기타 자산

- ③ 당해 법인의 해산에 의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교부되는 금전 및 기타 자산
- ④ 당해 법인의 합병에 의해 교부되는 금전 및 기타 자산

(나) 제2항: 무상주식 등

법인에 대해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각호에 열거하는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소유하는 주식(다음 중 ①의 경우에는 소각되지 않은 주식으로 한다)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액으로 간주하며, 또한 그 주주 등이 당해 사실의 발생시점에서 당해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① 이익소각 : 그 소각한 주식에 대응하는 자본금액(당해 금액이 그 소각에 충당된 이익 또는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 또는 잉여금의 금액)
- ② 이익적립금의 자본 또는 출자로의 전입 :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이익적립금액
- ③ 해산에 의해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후에 계속 또는 합병에 의해 소멸 : 그 분배가 자본 등의 금액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때 계산되는 분배 후 자본 등의 금액이, 그 계속 또는 합병시에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본 등의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족액

(다) 규정의 취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법인세법 제24조 및 일본소득세법 제25조는 상법의 배당개념을 확장하여, 법인이 실제로 배당을 하

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세법의 입장에서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이익적립금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주배당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실현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것이 배당인지 기타의 분배(양도이익)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법에서는 이 분배금 중에서 이익적립금에서 구성되는 금액은 이익(과거에 축적된 이익)의 분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2) 개정의 논의과정

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일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간주배당 개념은 2001년도의 세법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간주배당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 세법에서는 주주 등이 교부받은 금전 등의 금액이 구주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법인이 그 활동에 의해 가득한 이익을 환원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의 유무나 과다는 본래 주주 등의 주식의 장부가액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2001년도 세법개정에서 이와 같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무처리는 폐지되었고, 당해 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 중에서 그 교부의 원인이 된 주식에 대응하는 부분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부분을 간주배당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⁵¹⁾.

한편 위의 구 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일본소득세법 제25

51) 大藏財務協會(2001), p. 234.

조 제2항에 게재된 바와 같이 법인이 이익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등 일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입금액 중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응하는 금액이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제2항에 규정된 간주배당소득과세에 대한 적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현실적으로 법인으로부터의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일본의 세법에서 위에서 언급한 제2항에 의거한 간주배당과세를 유지해온 논거는 ①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 ② 전환대처규정이란 두 가지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우선 미실현 자본이득의 과세란 이익적립금의 자본으로의 전입에 의해 보유주식의 가치가 자본금의 증가 범위까지는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때를 과세 기회로 하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미실현 증가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에 따른 간주배당과세는 포괄적 소득개념에 기초한 미실현이득과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환대처규정이란 배당소득이 자본이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가 이연되거나 세부담이 경감·회피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간주배당과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가증권 양도익에 대한 과세가 원칙적으로 신고분리과세 혹은 원천분리과세에 의해 경감되고 있다는 점과 주식이 상속·증여로 인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2항에 규정된 간주배당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⁵²⁾.

그러나 이에 대한 간주배당과세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초점은 배당 가능성이 아니라 배당의 유무이

52) 渡辺徹也(1996), p. 76.

고, 자본전입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이 불공평을 가져오며, 둘째, 증가된 이익을 이익적립금으로 유보할 것인가 또는 이를 자본에 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문제로서, 전입액만큼 주식의 가치가 확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간주배당과세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즉 제2항에 규정된 간주배당과세의 기본적 목적이 주식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조기에 과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배당과세가 아니라 간주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만약 간주배당과세의 구체적인 목적이, 과세상 유리한 취급을 받는 양도소득으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여 유보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법적으로는 우회적인 간주배당과세가 아니라 실현시점에서 양도차익과세를 철저히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다⁵³⁾.

이상과 같은 논란을 거쳐 2001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결국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간주배당과세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주식의 이익소각의 경우 잔존주주에 대한 간주배당과세제도와 같은 금전 등의 교부가 없었던 경우의 간주배당과세제도도 폐지되었다.

3) 일본 법인세법상 간주배당 규정의 신·구법 비교

간주배당에 관한 신법의 규정과 구법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표 IV-1>과 같다.

53)金子 宏(1996), pp. 141~144.

<표 IV-1> 일본법인세법상 간주배당 규정의 신규법 비교

	2001년 이전		2001년 이후	
	규정	비고	규정	비고
간주배당의 판단	교부원인이 된 주식의 장부 가액을 초과한 때	폐지	주식발행법인의 자본 중 교부 원인이 된 주식에 대응하는 부분을 초과한 때	신설
간주배당 발생요건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출자)감소, 주식소각 - 퇴사·탈퇴에 의한 지분 환불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 -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 유지 유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출자)감소,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 - 주식의 소각 - 퇴사·탈퇴에 의한 지분환불 - 합병 - 분할형분할 - 자기주식의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신설 신설
간주배당 발생요건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 또는 잉여금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익소각) - 이익적립금의 자본 또는 출자로의 전입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 후 계속 또는 합병에 의한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폐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당사법인이 당해 합병 직전에 가지고 있던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 - 분할당사법인이 당해 분할 직전에 가지고 있던 분할 법인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신설

나. 현행 간주배당과세제도의 개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간주배당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과 아울러 일본법인세법상 조직재편성에 대한 과세제도가 2001년도 세법개정에서 신설되면서 일본법인세법 및 일본소득세법상에서 간주배당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2001년에 개정된 간주배당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일본법인세법 제24조 및 일본소득세법 제25조).

1) 조직재편성과 간주배당

일본의 법인세법은 2001년도 개정에서 합병 및 분할 등과 같은 기업조직 재편성과 관련한 세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합병 및 분할형분할 등 조직재편성에 따른 간주배당의 취급도 새롭게 정비되었다⁵⁴⁾.

우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형분할과 같은 적격조직재편성⁵⁵⁾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 등이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자산 등에 대한 자본이득이 계상되지 않으며, 또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적립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간주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자산의 대가로서 주식이외의 금전 등의 자산이 교부되는 비적격합병 및 비적격분할형분할이 행해진 경우에는 적격조직재편성과는 달리 이전된 자산은 시가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비적격합병 또는 비적격분할형분할⁵⁶⁾에 의해 교부를 받은 금전 등의 금액⁵⁷⁾ 중에서

54) 조직재편성에 따른 간주배당의 취급 및 조직재편성 관련 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大藏財務協會(2001) 참조.

55) 적격조직재편성이란 이전자산에 대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조직재편성을 말하며, 조직재편성에 있어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계하고, 이전자산의 대가로서 주식 이외의 자산(금전 등)이 교부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재편성을 말하며, 기업그룹 내의 조직재편성과 공동사업을 행하기 위한 조직재편성으로 나눌 수 있다.

56) 합병에 따른 간주배당의 발생은 구 세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할형분할의 경우에는 2000년도 상법 개정에서 회사분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2001년도 세법개정시 간주배당의 새로운 발생사유

피합병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 또는 분할법인의 이전자산 등의 장부가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자본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한다(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러한 분할법인의 이전자산 등의 장부가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자본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분할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자본 등의 금액에 아래의 ①의 금액 중에서 ②의 금액이 접하는 비율(소수점 이하 1단위 미만의 소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절상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일본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① 분할법인의 분할사업연도 또는 그 전 사업연도(분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그 제출일로부터 분할일까지의 기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간결산의 기간) 종료시점의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 ② 분할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이전자산의 장부가액으로부터 이전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

위의 ①에서 분할사업연도에 추가하여 그 전 사업연도나 중간결

로서 비적격분할형분할에 의한 금전 등의 교부가 추가되었다.

- 57) 이 금전 등의 금액에는 합병 또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식의 재매입대금, 합병비율 또는 분할비율에 端數가 있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수의 양도대금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최후사업연도 또는 분할사업연도(분할일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배당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본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의 3 제1항, 제2호, 제23조 제2항).

산의 기간에 의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시점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⁵⁸⁾.

그런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등, 합병시에 합병법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할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합병법인은 일단 일반주주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기주식의 할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그러나 현실에서는 합병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할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직접 자본적립금액을 감소시켜 소각과 마찬가지로의 처리를 한 것으로 된다(일본법인세법 제2조 제17호 ③). 이와 같은 취급은 분할형분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구 세법상의 제도하에서 낮은 장부가액으로 그 주식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그 주식의 양도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할당하지 않는 것에 의해 과세를 면하거나, 자회사를 모회사에 합병하여 매각 예정인 자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인상한 후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점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자산의 교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구 세법의 규정에서는 간주배당은 자산의 교부가 발생한 것과 자산의 교부가 발생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주식의 이익소각 또

58) 大藏財務協會(2001), p. 233.

는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의 규정이 있었지만(구 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2001년도 세법개정에 의해 자산의 교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간주배당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즉 2001년도 세법개정 전까지는 이익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주주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자산의 교부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주배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1년도 세법개정에 의해 금전, 기타의 자산의 교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간주배당과세는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세법개정 후 이에 대한 처리는 자본적립금액의 감소로 처리하게 된다(일본법인세법 제2조 17호, 7). 예를 들면, 이익적립금액 10을 자본에 적립한 경우 이익적립금액은 금액에 변동이 없으며, 이 10에 상당하는 자본적립금액을 감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익적립금액의 자본전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액에서 감산하는 것뿐이며, 간주배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된다.

3) 지분의 환불에 해당하는 간주배당

법인(공익법인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제외함. 이하 동일함)의 주주 등으로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자산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합계액이 그 교부의 원인이 된 주식(출자를 포함함. 이하 동일함)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익의 배당 등의 금액으로 간주한다(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3조). 이러한 규정은 주주의 투자자본을 초과하는 환불액 중에서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적립금의 환불부분을 이

의배당으로 간주하는 취지이다⁵⁹⁾.

- ① 합병(적격합병을 제외함)
- ② 분할형분할(적격분할형분할을 제외함)
- ③ 자본, 출자의 감소(주식소각을 제외함) 또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
- ④ 주식의 소각(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행한 것 제외)
- ⑤ 자기주식의 취득
- ⑥ 사원의 퇴사 또는 탈퇴에 의한 지분의 환불

4)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 대한 주식할당으로 보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이 주식할당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배당과세가 행하여지게 된다(일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①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또는 다른 피합병법인이 합병 직전에 가지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
- ② 분할법인의 주식으로서 분할승계법인이 분할형분할의 직전에 가지고 있던 것
- ③ 분할법인의 주식으로서 분할승계법인이 분할형분할에 의해 분할법인 또는 다른 분할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5) 주식양도이익 산정시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의 차감

일본의 개정 세법은 주식소멸에 대하여 혼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59) 井上久彌 外2人(2002), p. 118.

있다. 따라서 주식소멸대가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하되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주식소멸대가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양도소득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법인세법 제61조의 2).

V. 의제배당과세의 문제점

1. 주식소멸이익

주식소멸이익은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소멸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므로 실제상의 경제적 이익이다. 따라서 무상주식과는 달리 주식소멸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주식소멸이익에 관한 의제배당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 양도설의 논리에 의한 배당과세

주식소멸이익의 성격에 관하여는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으로 볼 수도 있고 배당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주식소멸이익을 배당으로 보려면 차액배당설에 따라 배당의 특성인 법인의 이익 중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하거나 전액배당설에 따라 주식의 소멸대가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의 주식소멸이익 계산방식은 주식의 소멸대가에서 당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양도설의 논리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감자대가와 감소하는 자본금의 차액은 감자차손익이 된다. 감자차손은 감자대가가 감소되는 자본

금을 초과하는 차액이며 감자차손은 잉여금 중에서 주주에게 지급된 것과 같으므로 차액배당설에 의할 경우 이 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하여야 하고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잉여금 중에서 지급될 여지가 없으므로 배당으로 볼 여지도 없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주식소멸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면서 그 계산방식은 양도설의 논리에 따르고 있다. 즉 소득구분이 과세논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현행 세법상의 주식소멸이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다.

나. 배당과세로 인한 과세형평의 저해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

주식소멸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든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궁극적인 조세부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상 소득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로 인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주식소멸이익과 주식양도이익은 다 같이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비하여 주식소멸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조세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우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특정 수입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저 9%⁶⁰⁾, 최고 36%의 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⁶¹⁾가 적용된다. 1원의 특정 수입이 배당소

60) 최저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실제로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과세로 인하여 원천징수세율인 15%가 적용된다.

61) 배당수입에 당해 배당수입의 19%를 가산(gross-up)하여 종합소득

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한 조세부담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종합소득세율 } 36\% \text{가 적용되는 경우} = \\ (1+0.19) \times 36\% - 0.19 = 23.84\% \end{aligned}$$

그러나 그 특정 수입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고 세율은 원칙적으로 20%가 적용되며⁶²⁾ 중복과세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 주주에게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식소멸이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고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7% 이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에게 있어서 27% 이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주식소멸이익을 주식양도차익과 유사한 일종의 자본이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당해 주식소멸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

금액을 산정한 후 동액을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2)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10%,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는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소멸이익이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이고 당해 주주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감자 등을 실시하기 전에 감자될 주식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당초의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당초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제3자는 주식의 양수 즉시 주식이 감자되지만 취득가액이 감자대가와 동일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액은 산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감자 등이 실시되기 직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바꾸어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세회피행위이며 이를 봉쇄하는 것은 현행 세법상 가능하지 않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이 27%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주식소멸이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도 주주가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즉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감자를 실시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경우 양도소득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있어서는 배당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되어 15% 또는 27%의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배당수입(의제배당 포함)에 대하여는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배당세액공제 대신에 배당수입 중 일부⁶³⁾를 익금에

63) 발행주식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50%,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배당금액의 30%(법인세법 제18조의 3).

산입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게 있어서는 주식소멸이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배당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며 이 또한 거주자의 경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형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회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주식소멸손실의 불공제

현행 세법상 주식소멸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주식의 소멸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식소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손실은 배당소득은 물론이고 다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공제될 방법이 없고 결손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소멸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주식소멸손실은 양도차손에 해당하여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주식소멸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한 주식소멸손실의 공제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소멸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주식소멸손실은 공제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라. 원천징수에 있어서 취득가액 확인의 곤란

주식소멸이익은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그로스업한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당으로 보는 주식소멸이익은 주식소멸대가에서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할 세액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취득가액의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원천징수세액이 과소징수·납부되었다면 부족세액과 함께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부과된다(소득세법 제158조). 그러나 주주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마. 소각·합병을 위한 주식매입의 성격구분 곤란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의 매입소각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주식의 매입소각에 있어서는 매입의 상대방에 따라 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매입하는 방법,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및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합병하기 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식소각 또는 합병 전에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이 주주에게 있어서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자 또는 합병을 위한 주식소멸로 보아 배당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그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92누 37868, 1992. 11. 24, 소득 46011-21033, 2000. 7. 25)”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21368, 2000. 11. 2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의 구분기준은 당해 매매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야 하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로 인하여 실제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해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거래의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법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다른 방식⁶⁴⁾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구분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

64) 당해 매매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과세한다. 또한 소득의 귀속시기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결정한 날이며 양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일이다.

기주식을 상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다(서일 46011- 10447, 2002. 4. 4 및 소득 46011-21368, 2000. 11. 27). 이는 불특정다수의 주주들이 감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불특정다수인들이 주식소각을 통하여 감자할 것을 알고 주식을 매매하였다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주 각자의 정보 또는 의사에 의하여 과세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자본감소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당해 자기주식을 법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는 분명한 답변을 미룬 채 앞서 언급한 구분기준만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서일 46011-10394, 2001. 11. 2). 주식소각의 목적이 분명한 주식취득이지만 실제로 주식소각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2. 무상주식

가. 경제적 이익과 무관

1) 현행 세법 및 관례의 입장

현행 세법에서 무상주식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세법의 입장은 무상주식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논지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대법91다10565, 1991. 9. 10).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중략)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음.”

2) 무상주식의 경제적 이익 여부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상주식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논거는 무상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잉여금을 감소시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 중에서 지급되는 현금배당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무상주식의 교부를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동시에 동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두 개의 거래가 결합된 것이라고 본다면 일견 타당하게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상주식의 교부는 현금배당과 다르며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첫째, 무상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본의 합계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즉 무상주식의 교부는 주식발행법인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무상주식이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교부되었다면 주주의 보유주식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간의 상대적 지분비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주주권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즉 주주 각자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주식 1주당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결국 주식발행법인의 자본합계에 대한 주주의 지분이 무상주식의 교부 전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무상주식의 교부가 가지는 정보효과로 인하여 주주의 부가가 증가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공시하였을 때 그 공시에 따르는 누적초과수익률은 연구의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호재(good news)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가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무상주식 등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실시를 공시하였을 때 주가가 항상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인 주가상승의 가능성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⁶⁵⁾하며 설사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65) 무상주식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도 그 상승분은 당해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상주식의 교부가 주주의 부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실현이익이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액면가액과세의 부당성

무상주식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본다고 할 경우 그 과세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무상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액면가액이 주식의 가치임을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주식이 주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라면 주식발행법의 기업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가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명목가액이 액면가액으로 일률적으로 평가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무상주식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더라도 그 과세가액은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액면가액은 아무런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를 기초로 과세하는 것은 징수편의 이외의 다른 타당한 논리를 찾기 어렵다.

면 무상주식의 교부가 발표된 후 오히려 주가가 권리락 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로서 다른 소득에서의 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 세법에서는 무상주식교부 후 주식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과세한다.

다. 무상증자와 무상감자의 과세 일관성 결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방편이다. 따라서 무상증자로 인한 무상주식의 교부를 주주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무상감자로 인한 주식의 소각은 주주의 경제적 손실로 보아야 하며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행정해석(法基通 19-19...35)에 의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라. 잉여금의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 결정의 부당성

현행 세법상 무상주식은 그 재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식은 과세대상이고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당해 자본잉여금이 발생할 당시 주식발행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라면 당해 무상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 소득을 구성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무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하고 그렇지 아니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무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아닌 것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여도 이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데 이익잉여금은 기업회계상의 금액으로서 이 중에는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처리되어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주주에게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무상주식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경제적 이익은 무상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지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발행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부된 무상주식이 거래될 때 어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식인지에 따라 거래가격(시가)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데 현행 세법상 무상증자의 재원인 잉여금의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자기주식으로 인한 지분비율 증가 과세의 문제점

1)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환급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기업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무능한 경영권을 영속화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및 342조). 또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상법 제369조), 이익배당청구권, 잔금 내지 재산 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배당, 출자의무 등도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것이 통설⁶⁶⁾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무부의 행정해석(법심 2301-1386, 1990. 2. 2)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그 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⁷⁾. 이와 같이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고 할 수 있다.

2) 지분비율 증가 과세의 연혁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의제배당의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무상주식을 배정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과세되는 경우는 2001년말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66) 이태로·이철송(1999, p.316) 등.

67) 상법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정의 예외적인 경우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만일 자기주식에 대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신주의 배정을 인정한다면 위 무상신주의 배정을 통하여 또 하나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법 제431조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상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 이외의 공익권과 자익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기주식의 법적 성질이나 자기주식의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상법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도 휴지된다고 할 것(동 취지 : 법무부 법심 3201-7067, 1987. 5. 22)인 바,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그 실질이 이익배당과 같이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이에 따른 무상신주를 받을 권리도 자익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자익권이 휴지된 상태에 있는 자기주식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그 다른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는 경우에 한하였다. 즉 개정 전에는 “의제배당의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목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개정전의 것)으로 열거하였었다.

그러나 자기주식에 배정되지 아니한 무상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주주들의 당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상대적 지분비율(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경우)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재배정을 받지 않은 주주에게 과세하였고 당해 주주가 불복청구한 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은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동 무상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처분청과 같이 당초 배정원칙대로 무상주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된 사실없이, 단지 자기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기타주주가 간접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하였다 하여 이 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확장 내지 유추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0서1263, 2000. 12. 31 합동회의결정).

경제적 효과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배정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2001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재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3) 지분비율 증가 과세의 부당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법문에서 지분비율의 증가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에 배정되지 아니한 무상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든 배정하지 아니하든 그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상의 지분비율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하겠다⁶⁸⁾.

(가) 실질적 지분비율의 불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의 환급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분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분비율은 무상주식을 교부하기 전이나 무상주식을 교부한 후나 동일하며 자기주식에 배정되지 아니한 무상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나 배정하지 아니하나 동일하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명목적으로 산정한 지분비율이 증가하였다고하여 과세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68) 자기주식보유 법인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의 비판론에 대하여는 김완석(2002, pp. 165~166)을 참조할 것.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갑법인의 주주는 을법인(5,000주 보유, 1주당 액면가액 1만원)과 김갑을씨(3,000주 보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5,000주의 무상주식을 교부하고자 한다. 이 때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식을 을법인과 김갑을씨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V-1> 및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1> 지분비율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재배정하는 경우)

	을법인	김갑을씨	합 계
무상주식 교부 전 지분비율	$\frac{5,000\text{주}}{8,000\text{주}} = 62.5\%$	$\frac{3,000\text{주}}{8,000\text{주}} = 37.5\%$	8,000주 (100%)
무상주식 교부	$5,000\text{주} \times 50\% = 2,500\text{주}$ $5,000\text{주} \times 20\% \times \frac{50\%}{80\%} = 625\text{주}$ 계 3,125주	$5,000\text{주} \times 30\% = 1,500\text{주}$ $5,000\text{주} \times 20\% \times \frac{30\%}{80\%} = 375\text{주}$ 계 1,875주	5,000주
무상주식 교부 후 지분비율	$\frac{8,125\text{주}}{13,000\text{주}} = 62.5\%$	$\frac{4,875\text{주}}{13,000\text{주}} = 37.5\%$	13,000주 (100%)

<표 V-2> 지분비율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재배정않는 경우)

	을법인	김갑을씨	합 계
무상주식 교부 전 지분비율	$\frac{5,000\text{주}}{8,000\text{주}} = 62.5\%$	$\frac{3,000\text{주}}{8,000\text{주}} = 37.5\%$	8,000주 (100%)
무상주식 교부	$5,000\text{주} \times 50\% = 2,500\text{주}$	$5,000\text{주} \times 30\% = 1,500\text{주}$	4,000주
무상주식 교부 후 지분비율	$\frac{7,500\text{주}}{12,000\text{주}} = 62.5\%$	$\frac{4,500\text{주}}{12,000\text{주}} = 37.5\%$	12,000주 (100%)

(나) 재배정 여부에 따른 의제배당액 상이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지분비율 증가분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재배정 여부에 따라 지분비율의 증가분이 달라진다. 이는 자기주식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주의 주식 수 증가분이 재배정하는 경우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제외한 상대적인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데 재배정 여부에 따라 의제배당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앞서의 예에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될 의제배당액을 비교해 보면 <표 V-3> 및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지 않게 된다.

<표 V-3> 의제배당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포함한
지분비율(재배정하는 경우)

	을법인	김갑을씨	자기주식	합 계
무상주식 교부 전 지분비율	$\frac{5,000\text{주}}{10,000\text{주}} = 50\%$	$\frac{3,000\text{주}}{10,000\text{주}} = 30\%$	$\frac{2,000\text{주}}{10,000\text{주}} = 20\%$	10,000주 (100%)
무상주식 교부	$5,000\text{주} \times 50\% = 2,500\text{주}$ $5,000\text{주} \times 20\% \times \frac{50\%}{80\%} = 625\text{주}$ 계 3,125주	$5,000\text{주} \times 30\% = 1,500\text{주}$ $5,000\text{주} \times 20\% \times \frac{30\%}{80\%} = 375\text{주}$ 계 1,875주	-	5,000주
무상주식 교부 후 지분비율	$\frac{8,125\text{주}}{15,000\text{주}} = 54.17\%$	$\frac{4,875\text{주}}{15,000\text{주}} = 32.5\%$	$\frac{2,000\text{주}}{15,000\text{주}} = 13.33\%$	15,000주 (100%)
증가된 지분비율	4.17%	2.5%	△ 6.67%	-
의제배당 주)	$15,000\text{주} \times 4.17\%$ $\times 10,000 = 6,250,000\text{원}$	$15,000\text{주} \times 2.5\%$ $\times 10,000 = 3,750,000\text{원}$	-	

주: 을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김갑을씨에게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표 V-4> 의제배당 비교사례: 자기주식을 포함한
지분비율(재배정않는 경우)

	을법인	김갑을씨	자기주식	합 계
무상주식 교부 전 지분비율	$\frac{5,000\text{주}}{10,000\text{주}} = 50\%$	$\frac{3,000\text{주}}{10,000\text{주}} = 30\%$	$\frac{2,000\text{주}}{10,000\text{주}} = 20\%$	10,000주 (100%)
무상주식 교부	$5,000\text{주} \times 50\% = 2,500\text{주}$	$5,000\text{주} \times 30\% = 1,500\text{주}$	-	4,000주
무상주식 교부 후 지분비율	$\frac{7,500\text{주}}{14,000\text{주}} = 53.57\%$	$\frac{4,500\text{주}}{14,000\text{주}} = 32.14\%$	$\frac{2,000\text{주}}{14,000\text{주}} = 14.29\%$	14,000주 (100%)
증가된 지분비율	3.57%	2.14%	△ 5.71%	-
의제배당	$14,000\text{주} \times 3.57\%$ $\times 10,000 = 5,000,000\text{원}$	$14,000\text{주} \times 2.14\%$ $\times 10,000 = 3,000,000\text{원}$	-	

바. 세수에의 기여 미흡

주식발행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잉여금의 자본전입 중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무상주식의 교부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는 액면가액의 최소 15%부터 최고 36%까지에 상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

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무상주식을 받을 유인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상주식의 교부가 억제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세수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잉여금 중에서는 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1989년부터 1993년의 기간중 김병기의 연구(1997)에 의하면 <표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91건의 무상증자 중에서 이익잉여금(제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31건에 불과하였다.

<표 V-5> 무상증자의 재원별 분류(1989~1993)

(단위: 건)

증자재원	순수무상	병행증자	포괄증자	합 계
재평가적립금	58	9	31	98
주식발행초과금	94	44	111	249
제적립금	14	1	7	22
이익준비금	0	5	4	9
자본준비금	2	0	6	8
합병차익	0	0	0	0
복합재원	5	0	0	5
합 계	173	59	159	391

자료: 김병기(1997), p.45

또한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무상증자를 실시한 주권상장기업 162개를 대상으로 무상증자의 재원을 살펴본 결과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전혀 없었다. 물론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상의 내용이 불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이 상당수(19개) 있었지만 주식에서 무상증자의 재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업으로 미루어 볼 때 주주에게 과세되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 무상증자의 재원별 분류(1998~2002년 10월)

(단위: 건)

무상증자재원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재평가적립금	19	21	10	4	4	58
주식발행초과금	4	45	14	8	4	75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0	4	1	0	0	5
합병차익	0	1	0	0	0	1
합병차익+주식발 행초과금	0	0	1	0	1	2
자본준비금	1	0	1	0	0	2
불분명	6	12	1	0	0	19
합 계	30	83	28	12	9	162

사. 세법의 복잡성 가중 및 기업회계와의 부조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 중의 하나로서 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세법이 복잡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과세논리의 정당성 또는 과세형평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증자를 억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면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

면서 세법만 복잡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 제61조). 따라서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세법과 차이가 있으며 무상주식을 교부받을 때와 그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때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법의 부조화는 납세순응비용뿐 아니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VI.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1. 주식소멸이익

가. 소득구분의 재편성

현행 세법상 주식소멸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그 계산 방식은 양도설의 논리를 따르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주식소멸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는 우선 주식소멸이익의 본질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소멸의 원인인 감자, 해산, 합병, 분할에 있어서 주식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대가지급의 형식으로 법인의 재산을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소멸을 위한 주식이 전은 양도와 배당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채택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즉 양도와 배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 구분기준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식소멸에 대하여 배당과 양도차익이 동시에 산정되는 혼합설은 이론적으로 정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 기교적이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세법에서 적용하

는 비안분적 개념(non-pro rata concept)과 법인축소원칙(corporate contraction doctrine)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이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주식소멸의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감자

(가) 안분적 감자시 배당간주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주주의 감자 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되도록 한다. 이는 감자 후 지분비율이 변동한다면 양도로 볼 수 있고 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지분의 처분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비안분적 개념의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현행 세법과는 달리 비안분적 감자로 인한 주식소각을 양도로 보아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안분적 감자 여부는 주주별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감자의 경우에도 어떤 주주는 양도에 해당하고 어떤 주주는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안분적 감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상 안분적 감자이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지분에 비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감자⁶⁹⁾는 안분적 감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다음의 두

69) 예를 들어 A와 B의 두 주주가 있는 법인이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20%를 매입소각하기로 하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A가 보유 하는 주식은 20%를 소각하고 B가 보유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분적 감자로 보아 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자 직후의 보통주 지분비율이 감자 직전의 보통주 지분비율의 80% 이상일 것.

② 감자 직후의 보통주 지분비율이 50% 이상일 것. 이 요건은 감자 직후의 지분비율이 감자 직전의 보통주 지분비율의 80%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감자 후에 계속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분비율의 증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나) 사업폐지로 인한 안분적 감자시 양도간주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자산을 주주에게 감자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은 법인의 잉여금을 분배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이 일부가 청산된 것과 같다. 즉 법인의 일부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감자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의 법인축소원칙을 도입하여 주주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감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당으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다) 자기주식취득의 감자 간주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때 당해 자기주식의 거래가 주주의 입장에서 양도에 해당

하는 주식은 20%보다 1주 많은 주식수를 소각하면 지분비율과 다르게 감자하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된다.

한다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주식소각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시기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이 된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발행법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의 취득은 그 취득시점에 있어서 사실상의 자본감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감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해진다.

첫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제한되어 있으나 그 제한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안분적 감자를 하는 대신 주주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함으로써 주주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지 않더라도 주식소각시기를 조정하여 과세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감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즉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에 있어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에게는 비안분적 개념과 법인축소원칙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구분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분배받은 재산가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이를 배당으로 보고 있으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각 주주의 지분은 소멸하므로 이는 각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므로 법인축소원칙에 의하면 배당으로 보기 어렵고 비안분적 개념에 의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 지분(지분비율)의 상당한 감소가 없어야 배당으로 볼 것인데 법인의 해산에 있어서는 모든 지분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법인의 합병

(가)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병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합병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이를 배당으로 보고 있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업은 폐지되는 것이며 각 주주의 지분은 소멸하므로 법인의 해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배당으로 보기 어렵고 각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과세특례합병

합병에 있어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은 인격승계설의 논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인격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자산의 집합적 매매로 보는 현물출자설과는 달리 합병차익과 세를 이연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과세특례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합병법인의 주식인데 동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과 취득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의제배당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대가의 전부가 합병법인의 주식이라면 의제배당이 산정될 수 없다. 다만, 합병대가의 5% 이내에서 합병교부금의 지불이 가능한데 이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세특례합병을 인격승계설의 논리로 이해하는 한 5% 이내의 합병대가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합병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때로 과세시기를 이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과세특례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은 배당도 아니고 양도도 아닌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형태만 변경된 주식의 계속 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과세합병에 해당하더라도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차익에 대하여 배당 또는 양도 소득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요건을 95%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세특례합병에 대하여 의제배당과 세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4) 법인의 분할

(가)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할

현행 세법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대가와 소멸되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이는 의제배당으로 과

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의 유형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배당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존속분할에 있어서는 비안분적 개념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 소멸하고 분할대가를 받는 안분적 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안분적 분할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안분적 분할의 판단은 법인의 감사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한편 소멸분할에 있어서는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과 유사한 것이므로 법인축소원칙과 비안분적 개념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세특례분할

과세특례분할에 있어서는 과세특례합병과 같은 논리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의 소멸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분할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소득구분에 관한 개선방안의 요약

앞서 언급한 주식소멸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개선안을 요약·비교하면 <표 V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I-1> 주식소멸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개선안

구 분		현행 세법	개선안
감자	안분적 감자	배당	배당. 단, 사업폐지로 인한 경우는 양도
	비안분적 감자	배당	양도
해산		배당	양도
합병	과세특례 이외 합병	배당	양도
	과세특례합병	배당	과세제외(과세이연)
분할	과세특례 이외 분할	배당	· 안분적 존속분할 : 배당 · 소멸분할 및 비안분적 존속분할 : 양도
	과세특례분할	배당	과세제외(과세이연)

나. 과세소득의 산정 및 과세방법

1) 양도로 보는 경우

앞서 제시한 의제배당과세제도 개선안에 따라 주식소멸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며 과세대상이 된다. 즉 법인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법인주주에게 있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으로 보나 당해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적용되던 배당액의 일부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개인주주에

게 있어서는 배당으로 보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반면에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 중 양도의 개념(소득세법 제88조)에는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소멸(배당으로 보는 경우 제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배당으로 보는 경우

(가) 전액배당설의 채택

주식소멸을 현행 규정에서와 같이 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즉 차액배당설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세법에서와 같이 전액배당설을 채택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차액배당설은 자본의 감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전액배당설은 주주 각자의 지분율이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타당한 개념이다. 생각하건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이 안분적 개념에 따라 배당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전액배당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감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 전액으로 하여야 한다. 전액배당설에 따라 배당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보다 주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입증과 관련한 거래당사자의 혼란은 없어지게 된다.

(나)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대가

주식발행법인이 감자 또는 분할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

가의 전액을 배당으로 본다 고 하더라도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당해 법인의 세무상 이익잉여금⁷⁰⁾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분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규정과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건설이자의 배당(상법 제463조)은 개업전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의 환급으로 보아야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배당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건설이자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자 또는 분할대가가 세무상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더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여 세무상 잉여금을 초과하는 배당부분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이중과세조정

감자 또는 분할대가의 전액을 배당으로 보는 경우 이중과세조정(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수입의 익금불산입, 개인의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중과세조정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는 전제하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보는 금액이 이미 과세된 이익잉여금 중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분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 중에서 지급되었다면 이중과세조정이 적

70) 세무상 이익잉여금은 기업회계장부상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잔액을 가감한 잔액이다.

용되어야 하지만 지분환급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중과세조정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을 감안할 때 감자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전액 이중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조치이다.

3) 사례의 예시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 이익잉여금이 200,000,000원 있는 A법인이 자본금의 50%를 감소하기로 하고 주식 1주당 15,000원에 5,00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또한 A법인의 주주는 갑과 을 2명으로 각각 5,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갑은 당해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고 을은 당해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과 을이 2,500주씩을 A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 갑과 을은 각각 3,750만원(= 2,500주 × 15,000원)씩 주식의 양도대가를 받게 되며 이는 안분적 감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A법인에게 2,500주씩을 양도하는 대신 갑주주는 3,200주를 양도하고 을주주는 1,800주를 양도하였다면 과세방법 및 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우선 주주 각각의 지분비율을 주식양도 전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갑주주의 주식양도 전 지분비율 = 5,000주/10,000주 = 50%

갑주주의 주식양도 후 지분비율(자기주식 제외) =

$$1,800\text{주} / 5,000\text{주} = 36\%$$

$$\begin{aligned} \text{을주주의 주식양도 전 지분비율} &= 5,000\text{주} / 10,000\text{주} = 50\% \\ \text{을주주의 주식양도 후 지분비율(자기주식 제외)} &= \\ & 3,200\text{주} / 5,000\text{주} = 64\% \end{aligned}$$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갑주주는 양도 후 지분비율이 양도 전 지분비율의 80% 미만이고 양도 후 지분비율이 50% 미만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을주주는 지분비율이 양도 전 지분비율의 80% 이상일 뿐 아니라 양도 후 지분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배당에 해당한다. 이들의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begin{aligned} \text{갑주주의 양도소득} &= 3,200\text{주} \times (15,000 - 8,000) = 22,400,000\text{원} \\ \text{을주주의 의제배당} &= 1,800\text{주} \times 15,000 = 27,000,000\text{원} \end{aligned}$$

다. 양도설로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의 문제

우선 주식소멸이익을 안분적 감자에서와 같이 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금액 산정방식과 달리 감자대가의 전액이 배당이 되므로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배당으로 보던 것을 안분적 감자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분적 존속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현행 의 제배당 산정방식이 양도설에 입각한 것이므로 양도개념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양도로 보는 경우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이외의 주주들에게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게 되며 대주주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이 20%⁷¹⁾로서 배당세액공제를 감안한 배당소득세율의 최고치 23.84%⁷²⁾ 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의제배당과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시켜 과세제외되는 주주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 무상주식

가. 과세제외원칙

주식발행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무상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 계정대체 사항에 불과하며 무상주식의 교부로 기업의 실질가치가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상주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는 세제의 국제적 조화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오래 전부터 과세제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함께 오랫동안 무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하여 오던 일본도 2001년부터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셋째,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71) 단, 중소기업주식의 경우에는 10%가 적용되며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72)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6%이지만 배당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유효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

$$(1 + \text{가산배당 } 0.19) \times 36\% - \text{배당세액공제 } 0.19 = 23.84\%$$

양도소득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으나 그간 양도소득세제가 개선⁷³⁾되었고 설사 양도소득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무상주식의 교부에 대신 과세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예외

1) 비안분적 배정

무상주식에 대하여 과세제외원칙을 채택하더라도 무상주식을 주주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정하지 아니하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무상주식수보다 더 많은 무상주식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전과 비교할 때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무상주식이 자기주식에 배정될 수 없음에 따라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주식발행법인 이외의 다른 주주들의 상대적 지분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무상주식수보다 더 많은 무상주식을

7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총발행주식수의 3% 이상 소유주주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1999년부터 과세(소득세법 제94조)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주권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는 개선되었다.

분배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 세법의 비안분적 개념에 따라 자신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은 주식수보다 많은 무상주식을 분배받아 지분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이익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주주간에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배정함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는 주금납입일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주주가 무상주식을 포기하거나 당초부터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간에 이익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우리나라의 세법체계를 고려할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를 보완하여 무상증자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 선택적 무상주식

주주에게 무상주식과 현금 기타 다른 자산에 의한 배당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무상주식을 선택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도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

전의 지분비율이 증가 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비안분적 배정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다. 주식배당

주식배당의 법률적 형식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교부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식배당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면 조세의 중립성이 손상될 것이므로 주식배당에 대하여도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법인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에 따라 주주가 받는 대가가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인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의 가액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주식소멸이익의 경우 당해 주식소멸을 양도로 볼 수도 있고 배당으로 볼 수도 있으며 무상주식의 경우 당해 무상주식이 주주에게 있어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주식소멸이익의 구분기준은 비안분적 개념과 법인 축소원칙의 두 가지로서 사업폐지와 관련되지 않는 안분적 감자와 분할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Spin off의 경우에만 배당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고 있다. 또한 무상주식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안분적 배정 등 불평등 배정, 주주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 배분, 우선주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예외조치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제배당과세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개편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식소멸이익에 대한 과세는 산정방식은 양도설에 따르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며 양도의 성격을 갖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과세형평이 저해되고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또한

주식소멸손실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천징수시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무상주식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과세하고 있으나 무상주식의 교부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의 입장에서 자본전입되는 잉여금의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무상주식의 과세는 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해치면서 법인들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회피하게 되므로 세수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소멸이익의 과세에 있어서 주식소멸을 현행과 같이 배당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양도와 배당으로 구분한다. 그 구분기준으로는 미국 세법에서 적용하는 비안분적 개념과 법인축소원칙을 적용하여 사업폐지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안분적 감자와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안분적 존속분할의 경우에만 배당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둘째, 주식소멸을 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액배당설을 채택하여 주주가 받는 주식소멸대가 전액을 배당수입으로 보되, 이종과세조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셋째, 무상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넷째, 무상주식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

하여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식배당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교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로 양도소득으로 보거나 과세에서 제외할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의 감소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병기, 「무상증자의 실시동기, 증자비율 및 시점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제20집, 1997, pp. 35~70.
- 김완석, 『법인세법론』, 2002, (주)광교 T&S.
- 김정자, 「우리나라에서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998, pp. 34~76.
- 김철교, 「무상주 발행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관리연구』 제9권 제2호, 1992, pp. 209~242.
- 김태혁 · 신용길, 「주식배당의 공시효과와 정보전달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제15집, 1993, pp. 79~110.
- 서원동, 『과세효과를 고려한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우춘식 · 신용균, 「주식배당의 공시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관리연구』 제13권 제1호, 1996, pp. 115~136.
- 이태로 · 이철송, 『회사법강의』, 1999, 박영사.
- 임웅기 · 남명수, 「무상증자 실시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투자자 인식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6호, 1993, pp. 77~107.
- 정찬섭,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액면분할의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채수열, 「의제배당과세론-의제배당이 과세소득인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14호, 1999, pp. 399~428.
- 金子 宏, 『所得税の理論と課題』, 稅務經理協會, 1996,

- 大藏財務協會, 『詳解 企業組織再編税制』, 2001.
- 渡辺徹也, 「みなし配当課税と租税回避」, 『税法學』, 第536号, 1996.
- 武田昌輔, 『企業課税の理論と課題』, 税務經理協會, 1995.
- 井上久彌・柳裕治・失内一好, 『法人税の計算と理論』, 税務研究會
出版局, 2002.
- 川田剛, 『基本 法人税法』, 大藏財務協會, 2002.

- Bittker, Boris I. and James S.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7th ed., Warren Gorham & Lamont, 2002.
- Brown, Stephen J. and Jerold B. Warner, “Using Daily Stock Returns: the Case of Event Stud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 pp. 3~31.
- Grinblatt, Mark S., Ronald W. Masuhs and Sheridan Titman, “The valuation effect of Stock Splits and Stock Dividen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3, 1984, pp. 461~490.
- Lakonishok, Josef and Baruch Lev, “Stock Splits and Stock Dividends, Why, Who, and When”, *Journal of Finance* 42, 1987, pp. 913~931.
- McNichols, M. and A. Dravid, “Stock Dividends, Stock Splits, and Signalling”, *Journal of Finance* 45, 1990, pp. 857~879.
- Woolridge, J. Randall and D. R. Chambers, “Reverse Splits and Shareholder Wealth,” *Financial Management*, 1983, pp. 5~15.

<국문요약>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준규 · 김진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법인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에 따라 주주가 받는 대가가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이인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의 가액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주식소멸이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소멸이익을 양도설에 따라 산정하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양도의 성격을 갖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무상주식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무상주식의 교부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의 입장에서 자본전입되는 잉여금의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무상주식의 과세는 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해치면서 법인들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회피하게 되므로 세수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소멸이익의 과세에 있어서 주식소멸을 현행과 같이

배당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양도와 배당으로 구분한다. 그 구분기준으로는 미국 세법에서 적용하는 비안분적 개념과 법인축소원칙을 적용하여 사업폐지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안분적 감자와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안분적 존속분할의 경우에만 배당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둘째, 주식소멸을 배당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액배당설을 채택하여 주주가 받는 주식소멸대가 전액을 배당수입으로 보되, 이종과세 조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셋째, 무상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넷째, 무상주식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식배당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교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로 양도소득으로 보거나 과세에서 제외할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의 감소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form Proposal for the Deemed Dividend Taxation

Lee, June-Q and Jin Soo Kim

Deemed dividends under current income tax laws are divided into two kinds. One is the distribution in kind of the corporation's own stock other than stock dividends ("stock distributions") and the other is the gain on the extinguishment of stock rights arising from mergers, divisions, liquidations or stock redemptions ("stock extinguishment gain").

Stock extinguishment could be treated as a sale of stock or a dividend or both of them for the taxation purpose. Main problems with current taxation of the stock extinguishment gain are inconsistency and inequity. Inconsistency arises when the gain is treated as the dividend income even if the computing method of the gain is similar to that of capital gains by subtracting acquisition costs of stock from proceeds of the stock extinguishment. And inequity arises because the gain is treated as not a capital gain but a dividend income which is taxed more heavily.

Stock distributions are not real or economic income to shareholders because it is merely a reclassification of accounts (i.e., the transfer of surplus, reserves or retained earnings into

paid-in capital account) and the shareholders can gain nothing from stock distributions that simply redivide the same residual equity pie into smaller slices.

Remedi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stock extinguishment should be treated as a sale of stock. But exceptionally, the pro rata stock redemptions with no relation to business termination and the pro rata taxable spin-off should be treated as a dividends according to the non-pro rata concept and corporate contraction doctrine which are applied in tax laws of the United States. Second, in case that the stock extinguishment is treated as a dividend, whole amount of the proceeds from the stock extinguishment should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Third, stock distributions should not constitute taxable income as a general rule. Fourth, stock distributions should look on as gifts between shareholders and gift taxes should be levied if the corporation establishes that the distribution would not have a proportionate result. Lastly, stock dividends should be treated as stock distributions and, accordingly, be tax-free if they are made to shareholders at pro rata basis.

Because the above-mentioned remedies could give rise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it is required to enlarge the extent of shareholders which are subject to capital gain taxes on stock.

<著者略歷>

李 俊 奎

建國大學校 經營學科 卒業
美國 Chicago大 經營學 碩士(MBA)
建國大學校 經營學 博士
韓國公認會計士 및 美國公認會計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招聘研究委員
慶熙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金 珍 洙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先任研究委員

政策報告書 02-05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2年 12月 28日 印刷

2002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李俊奎·金珍洙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
印 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17-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